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주요한 예규(例規)에 대하여

정보신청기관 :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

I. 머리말

일본 규슈지방(九州地方)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네 개 섬의 하나다. 규슈지방은 오키나와(沖繩)를 포함하면 여덟 개 현(縣)(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兒島), 오키나와(沖繩))로 구성된다. 규슈지방은 한국에서 가깝고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서 방문한다. 규슈지방 중에서도 부관페리나 후쿠오카 공항 등 규슈지방의 현관과 같은 역할을 맡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후쿠오카현이다. 규슈지방

의 각 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오카현의 인구는 약 508만 명이며, 나머지 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표1〉 규슈지방의 각 현(縣) 인구

현(縣)	인구
福岡(후쿠오카)	5,082,198 ¹⁾
佐賀(사가)	849,809 ²⁾
長崎(나가사키)	1,425,935 ³⁾
熊本(구마모토)	1,812,502 ⁴⁾
大分(오이타)	1,190,617 ⁵⁾
宮崎(미야자키)	1,130,997 ⁶⁾
鹿兒島(가고시마)	1,698,401 ⁷⁾
沖繩(오키나와)	1,403,995 ⁸⁾
총계	14,594,454



- 1) 후쿠오카(福岡縣), http://www.pref.fukuoka.lg.jp/uploaded/life/56/56903_12663358_misc.pdf(검색일: 2012. 1. 30.).
- 2) 사가현(佐賀縣), <http://www.pref.saga.lg.jp/web/var/rev0/0089/0039/20111228105711.pdf>(검색일: 2012. 1. 30.).
- 3) 나가사키현(長崎縣), http://www.pref.nagasaki.jp/toukei/new_date/nen_geppou/tuki/kokuseichousa/suikei/suikei.htm(검색일: 2012. 1. 30.).
- 4) 구마모토현(熊本縣), http://www.pref.kumamoto.jp/uploaded/life/1055392_1113937_misc.pdf(검색일: 2012. 1. 30.).
- 5) 오이타현(大分縣), <http://www.pref.oita.jp/site/toukei/cpe-201101.html>(검색일: 2012. 1. 30.).
- 6) 미야자키현(宮崎縣), <http://www.pref.miyazaki.lg.jp/contents/org/honbu/toukei/jinko-setai/index.html>(검색일: 2012. 1. 30.).
- 7) 가고시마현(鹿兒島縣), <http://www.pref.kagoshima.jp/ac09/tokei/bunya/jinko/suikei/h240101.html>(검색일: 2012. 1. 30.).
- 8) 오키나와현(沖繩縣), http://www.pref.okinawa.jp/toukeika/estimates/estimates_suikei.html(검색일: 2012. 1. 30.).

후쿠오카현은 28개의 市, 30개의 町, 2개의 村, 계 60개의 市町村(한국의 시읍면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후쿠오카 지역(福岡地域), 기타큐슈 지역(北九州地域), 지쿠고 지역(筑後地域), 지쿠 지역(筑豊地域)의 네 지역으로 구별된다.⁹⁾ 후쿠오카현에는 후쿠오카시(福岡市)와 기타큐슈시(北九州市)라는 두 가지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¹⁰⁾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현청(縣廳)소재지인 후쿠오카시는 규슈지방 최대 도시이다. 후쿠오카시는 아시아 주변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또한 거리적으로 봐도 후쿠오카시로부터 한국 부산까지 약 200km로서, 일본 수도인 도쿄보다도 가깝다.

이하에서는 규슈지방 최대도시인 후쿠오카시

에서 주요한 예규를 살펴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II. 후쿠오카시 예규 개관

일본 헌법 제94조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후쿠오카시에서도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예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후쿠오카시의 모든 예규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쿠오카시 예규를 수록한 인터넷 사이트인 「후쿠오카시 예규집」에 따르면 후쿠오카시 예규를 아래와 같은 분류로 정리한다.¹¹⁾

〈표 2〉 후쿠오카시 분류별 예규

분류	장	주요한 예규
제1류 통칙	제1장 시제시행 등	후쿠오카시의 휴일을 정하는 조례
	제1장의 2 총합계획	후쿠오카시 기본구상(構想)
	제2장 공고식·홍보	후쿠오카시 공고식조례
	제3장 표창	후쿠오카시 명예시민조례
제2류 의회·선거·감사	제4장 정치·공무원윤리	후쿠오카시의회 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의회	후쿠오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회 선거	후쿠오카시장선거공보발행조례
	제3장 감사	후쿠오카시 감사위원회조례



9) 후쿠오카현(福岡縣), <http://www.pref.fukuoka.lg.jp/f08/gaiyou-jinkoutochiiki.html>(검색일: 2012. 1. 30.).

10) 정령(政令)에서 지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11) 후쿠오카시(福岡市) 예규집, http://www.city.fukuoka.lg.jp/d1w_reiki/mokuji_bunya.html(검색일: 2012. 1. 30.).

분류	장	주요한 예규
제3류 행정일반	제1장 조직	후쿠오카시 사무 분장(分掌)조례
	제2장 서무	시장의 선결처분사항에 관한 조례
	제2장의 2 행정절차	후쿠오카시 행정절차조례
	제2장의 3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후쿠오카시 정보공개조례
	제3장 문서·공인	후쿠오카시 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장 도장·주인	후쿠오카시 도장(印鑑)조례
	제4장의 2 사람에게 다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람에게 다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후쿠오카를 만들 조례(人に優しく安全で快適なまち福岡をつくる条例)
	제4장의 3 불법(迷惑)주차	후쿠오카시 불법주차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장의 4 절수(節水) 추진	후쿠오카시 절수 추진조례
	제5장 재해대책	후쿠오카시 방재회의조례
	제6장 시민회관	후쿠오카시민회관조례
	제6장의 2 남녀공동참획	후쿠오카시 남녀공동참획추진센터조례
	제6장의 3 문화진흥	후쿠오카시 음악·연극연습장조례
	제6장의 4 지역교류센터	후쿠오카시 지역교류센터조례
	제6장의 5 시민공익활동	후쿠오카시 시민공익활동추진조례
	제6장의 6 소비생활	후쿠오카시 소비생활조례
제7장 규약	후쿠오카 도시권 광역행정사업조합규약	
제8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행사장(催物場)에서의 질서유지 및 재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류 인사	제1장 정원	후쿠오카시 직원정수조례
	제2장 임용	후쿠오카시 직원의 재임용에 관한 조례
	제3장 복무	후쿠오카시 직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조례
	제4장 분한·파견·징계	후쿠오카시 직원의 분한에 관한 조례
	제5장 연수·근무평정	후쿠오카시 직원 연수규정
	제6장 직원 후생	후쿠오카시 직원 후생회조례
	제7장 공무재해보상	후쿠오카시의회의원 기타 비상근직원의 공무재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장 보장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의 요구에 관한 규칙
	제9장 직원단체	직원단체의 등록에 관한 조례
	제10장 인사위원회	후쿠오카시 인사위원회설치조례
	제11장 기타	후쿠오카시 인사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 공표에 관한 조례
제5류 급여	제1장 보수·비용변상	후쿠오카시 특별직직원 등의 의원보수, 보수, 비용변상 및 기말수당에 관한 조례
	제2장 여비	후쿠오카시 직원 등 여비지급조례
	제3장 급여·수당	후쿠오카시 특별직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조례
	제4장 퇴은료(退隱料)	퇴은료 유족부조료 및 급여금지조례

분류	장	주요한 예규
제6류 재정	제1장 예산·결산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제2장 시세·수수료	후쿠오카시 시세조례
	제3장 회계	후쿠오카시 장기계속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
	제4장 시채	후쿠오카시 시채조례
	제5장 수익사업	후쿠오카시 모터보트 경주조례
	제6장 특별회계	후쿠오카시 시채관리특별회계조례
제7류 재산	제1장 재산	후쿠오카시 행정재산사용료조례
	제2장 기금	후쿠오카시 재정조정기금조례
	제3장 재산구	후쿠오카시 재산구특별회계조례
제8류 민생	제1장 사회복지	후쿠오카시 복지의 도시 만들기 조례(福岡市福祉のまちづくり条例)
	제2장 보험	후쿠오카시 국민건강보험조례
제9류 위생	제1장 보험위생	후쿠오카시 병원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묘지, 기타	후쿠오카시 묘지조례
	제3장 환경	후쿠오카시 환경기본조례
제10류 산업·항만	제1장 상공·관광	후쿠오카시 중소기업진흥조례
	제2장 시장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업무조례
	제3장 농림·수산	후쿠오카시 어항관리조례
	제4장 항만	하카타항 항만시설관리조례
제11류 도시계획	제1장 도시계획	후쿠오카시 도시계획심의회조례
	제2장 구획 정리	후쿠오카 도시계획사업 메이하마(姪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3장 교통대책	후쿠오카시 교통안전대책회의조례
	제4장 공원	후쿠오카시 공원조례
	제4장의 2 도시경관	후쿠오카시 도시경관조례
	제5장 야외 광고물	후쿠오카시 옥외(屋外)광고물조례
제12류 토목·건축	제1장 도로·하천·하수도·주차장	후쿠오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장 건축	후쿠오카시 건축기준법 시행조례
	제3장 주택	후쿠오카시영주택조례
제13류 수도사업	제1장 조직·사무	후쿠오카시 수도사업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수도국의 주요직원을 정하는 규칙
	제3장 재무	후쿠오카시 수도사업 감채기금 및 건설개발기금 조례
	제4장 급수	후쿠오카시 수도급수조례
제13류의 2 교통사업	제1장 조직·사무	후쿠오카시 교통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교통국의 주요직원을 정하는 규칙
	제3장 재무	후쿠오카시 고속철도 건설기금조례
	제4장 운수	후쿠오카시 고속철도 승차요금 등 조례
	제5장 방재	후쿠오카시 교통국 방화관리규정

분류	장	주요한 예규
제14류 소방	제1장 조직·서무	후쿠오카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설치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소방리원(吏員) 계급규칙
	제3장 예방·소방	후쿠오카시민 방재센터조례
	제4장 소방단	후쿠오카시 소방단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5류 교육	제1장 교육위원회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위원정수조례
	제2장 학교교육	후쿠오카시립 초등학교설치조례
	제3장 사회교육	후쿠오카시립 시민센터조례

후쿠오카시 예규집에 따르면 조례의 종류를 제1류로부터 제15류까지 분류한다. <표2>를 보면 제1류 ‘통칙’, 제2류 ‘의회·선거·감사’, 제3류 ‘행정일반’, 제4류 ‘인사’, 제5류 ‘급여’, 제6류 ‘재정’, 제7류 ‘재산’, 제8류 ‘민생’, 제9류 ‘위생’, 제10류 ‘산업·항만’, 제11류 ‘도시계획’, 제12류 ‘토목·건축’, 제13류 ‘수도사업’, 제13류의 2 ‘교통사업’, 제14류 ‘소방’ 그리고 제15류가 ‘교육’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예규 중에서 복지, 도시시설관리, 지역개발, 공직에 관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후쿠오카시의 각 분야별 예규

1. 복지에 관한 예규

후쿠오카시 예규 중에서 복지에 관한 것은 예규집 제8류 ‘민생’에서 규정된다. 복지에 대해서는 첫째는 총론적인 것, 둘째는 모자가정, 셋째는

아동, 넷째는 장애인, 다섯째는 고령자 등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¹²⁾

먼저, 총론적인 것은 제1장 ‘사회복지’에서 “후쿠오카시 복지도시만들기조례(福岡市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 平成10年3月30日 條例第9號)”, “후쿠오카시 보험복지심의회조례(福岡市保險福祉審議會條例 平成19年3月15日 條例第11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복지도시만들기조례”는 “모든 시민이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떠받치고, 보람이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도시만들기에 대하여, 기본이념과 시민 사업자 및 시의 책무를 명백하게 하면서 복지도시만들기를 총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다정함으로 가득해진 건강하고 평안한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체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개인으로 존중받는 사회(제2조 제1호), 모든 시민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제2호),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보장 받는 사회(제3호), 모든 시민이 서로 떠



12) 후쿠오카시 예규집, http://www.city.fukuoka.lg.jp/d1w_reiki/mokuji_bunya.html(검색일: 2012. 1. 30.).

받치고 연대하는 사회(제4호),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제5호), 모든 시민이 복지의 도시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제6호),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복지의 국제 교류를 하는 사회(제7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는 “스스로 소유하고 또는 관리하는 대상시설 및 공공차량 등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고령자나 장애인, 아이를 동반하는 사람 등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에 있어서 시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국건축심사과(住宅都市局建築審査課), 교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계획과(保健福祉局計劃課),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하수도국계획조정과(道路下水道局計劃調整課), 각구사무실유지관리과(各區役所維持管理課) 혹은 항만국유지과(港灣局維持課), 공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국공원계획과(住宅都市局公園計劃課), 주택도시국공원건설과(住宅都市局公園建設課) 혹은 항만국유지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로하수도국도로유지과(道路下水道局道路維持課), 개발행위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국개발·건축조정과(住宅都市局開發·建築調整課)가 사전협의의

연락처가 된다.¹³⁾

모자가정·아동·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노약자’에 대한 예규도 다양하게 제정된다. 먼저 모자가정에 대한 것으로는 “후쿠오카 편부모가정 등 의료비조성조례(福岡市ひとり親家庭等医療費助成條例 昭和58年10月1日 條例第56號)”, “후쿠오카시 모자복지센터조례(福岡市立母子福祉センター條例 昭和60年7月2日 條例第46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모자복지센터조례”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하여 각종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후쿠오카시 모자복지센터를 설립하였다(제1조). 당해 센터에서는 각종 상담에 관한 것(제2조 제1호), 생활지도 및 생업 지도에 관한 것(제2호), 기능 습득에 관한 것(제3호),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사이에서의 당해 이용자의 아동 보육에 관한 것(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 등을 수행한다.

아동 복지에 대한 것은 “후쿠오카시립 보육소조례(福岡市立保育所條例 昭和39年3月31日 條例第61號)”, “후쿠오카시 셋째 아이 우대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福岡市第3子優遇事業の實施に關する條例 平成17年6月23日 條例第105號)”, “후쿠오카시 빈집 가정 어린이모임 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福岡市留守家庭子ども會事業の實施に關する條例 平成18年3月30日 條例第15號)”, “후쿠오카시 아동복지심의회조례(福岡市兒童福祉審議會條例 平成12年3月27日 條例第



13) 후쿠오카시(福岡市), <http://www.city.fukuoka.lg.jp/hofuku/keikaku/qa/FAQ1460.html> (검색일: 2012. 2. 8.).

17號)”, “후쿠오카시 아동관조례(福岡市立兒童館條例 昭和45年1月5日條例第2號)”, “후쿠오카시 아동상담소조례(福岡市兒童相談所條例 昭和47年3月30日條例第34號)”, “후쿠오카시 어린이 의료비조성조례(福岡市子ども医療費助成條例 昭和48年4月2日條例第38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어린이 의료비조성조례”에서는 “어린이의 의료비를 조성함으로써 그 보건 향상을 도모하여 어린이를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후쿠오카시에 주소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의료비 조성을 받을 수 있다(제3조 제1항).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것으로는 “후쿠오카시 장애인 자립지원법시행조례(福岡市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條例 平成18年9月21日條例第52號)”, “후쿠오카시립 장애인 생활·취업지원시설조례(福岡市立障がい者生活·就勞支援施設條例 平成20年12月22日條例第49號)”, “후쿠오카시립 심신장애복지센터조례(福岡市立心身障がい福祉センター條例 昭和54年3月8日條例第16號)”, “후쿠오카시립 요육센터조례(福岡市立療育センター條例 平成14年3月28日條例第13號)”, “후쿠오카시 장애인후생상담소조례(福岡市障がい者厚生相談所條例 平成12年3月27日條例第18號)”, “후쿠오카시립 장애인프렌드홈조례(福岡市立障がい者フレンドホーム條例 昭和62年3月9日條例第15號)”, “후쿠오카시립 장애인 스포츠센터조례(福岡市立障がい者スポーツセンター條例 昭和59年3月29日條例第10號)”, “

후쿠오카시립 점자도서관조례(福岡市立点字圖書館條例 平成8年3月28日條例第11號)”, “후쿠오카시립 지체부자유아 통원시설조례(福岡市立肢体不自由兒通園施設條例 昭和48年3月31日條例第15號)”, “후쿠오카시 지적장애인 통원시설조례(福岡市知的障がい兒通園施設條例 昭和48年3月31日條例第16號)”, “후쿠오카시 중도심신장애인 복지수당 지급 조례(福岡市重度心身障がい者福祉手当支給條例 昭和48年4月2日條例第40號)”, “후쿠오카시 중도장애인 의료비 조성조례(福岡市重度障がい者医療費助成條例 昭和49年6月27日條例第62號)”, “후쿠오카시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제도 조례(福岡市心身障害者扶養共濟制度條例 昭和47年1月10日條例第15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장애인 생활·취업지원시설조례”에서는 “장애인이 가지는 능력 및 적정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 취업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쿠오카시립 장애인 생활·취업지원시설을(중략) 설치한다”(제1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포츠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아 통원시설 등 여러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것으로는 “후쿠오카시립 데이서비스센터조례(福岡市立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條例 平成6年3月31日條例第18號)”, “후쿠오카시립 송수원조례(福岡市立松濤園條例 昭和47

年3月30日條例第30號)”, “후쿠오카시립 노인복지센터조례(福岡市立老人福祉センター條例 昭和43年3月30日條例第17號)”, “후쿠오카시 노인 휴식의 집 조례(福岡市立老人いこいの家條例 昭和51年4月12日條例第48號)”, “후쿠오카시 노인 의료비 조성 조례(福岡市老人医療費助成條例 昭和47年3月30日條例第35號)”, “후쿠오카시 경로금 조례(福岡市敬老金條例 昭和46年4月5日條例第28條)”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경로금 조례”에서는 “오랫동안 사회 진전에 기여한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금을 지급하여 경로의 의를 표하고 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지급일 현재 나이가 80세, 88세 또는 10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금이 지급된다(제2조 제1항). 80세 자에게는 10,000엔(제3조 제1호), 88세 자에게는 20,000엔(동조 제2호), 100세 자에게는 30,000엔(동조 제3호), 100세 이상인 자에게는 그 후에도 매년 10,000엔(동조 제4호)이 지급된다.

고령자에 대한 조례를 보면 조례를 통해서 데이서비스센터, 송수원(松濤園=양로원)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시시설관리에 관한 예규

후쿠오카시의 도시시설관리에 관한 예규를

보고자 한다. 후쿠오카시 예규집 제3류 ‘행정일반’ 관련에서는 시민의 오락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다.¹⁴⁾ 구체적으로는 “후쿠오카시민회관조례(福岡市民會館條例 昭和38年9月26日條例第30號)”, “후쿠오카시 음악·연극 연습장 조례(福岡市音楽・演劇練習場條例 平成3年3月11日條例第36號)”, “후쿠오카시 지역교류센터 조례(福岡市地域交流センター條例 平成11年3月11日條例第8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 시민회관 조례”에서는 “학술문화의 향상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후쿠오카 시민회관을 설치하고 있다(제1조).

“후쿠오카시 음악·연극 연습장 조례”에서는 “음악, 연극 등의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시민문화 및 지역공동체 활동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악·연극 연습장을 설치하고 있다(제1조).

“후쿠오카시 지역교류센터조례”에서는 “지역주민의 교류를 촉진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 및 스포츠 진흥 및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교류센터를 설치한다(제1조). 후쿠오카시 하카타미나미 지역교류센터(福岡市博多南地域交流センター), 후쿠오카시 와지로 지역교류센터(福岡市和白地域交流センター), 후쿠오카시 세이부 지역교류센터(福岡市西部地域交流センター)가 설치된다. 이러한 센터에는 다목적홀, 회의실, 화실(和室=일본식 방), 체육관, 트레이



14) 후쿠오카시 예규집, http://www.city.fukuoka.lg.jp/d1w_reiki/mokuji_bunya.html(검색일: 2012. 2. 8.).

닝 룸, 차일드 룸 등의 시설이 구비된다(제2조).

기타 병원사업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福岡市病院事業の設置等に関する條例 昭和43年3月30日條例第19號)”, 항만에 대해서는 “하카타항 항만시설 관리조례(博多港港灣施設管理條例 昭和39年3月31日條例第78號)”, 시영주택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영주택조례(福岡市營住宅條例 平成9年3月31日條例第40號)”,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교통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福岡市交通事業の設置等に関する條例 昭和49年4月1日條例第40號)”, 소방서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설치조례(福岡市消防本部及び消防署設置條例 昭和39年3月31日條例第79號)” 등의 조례가 있다.

3. 지역개발에 관한 예규

후쿠오카시에서의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후쿠오카시 예규집 제11류 ‘도시계획’에 수록된다.¹⁵⁾ 제1장 ‘도시계획’에 분류된 것으로는 “후쿠오카시 도시계획심의회조례(福岡市都市計劃審議會條例 平成12年3月27日條例第24號)”, “후쿠오카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福岡市綠地保全と綠化推進に関する條例 昭和49年4月1日條例第32號)”, “후쿠오카시 지구계획 등의 안 작성절차에 관한 조례(福岡市地區計劃等の案の作成手續に関する條例 昭和59年3월

29日條例第23號)”, “후쿠오카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福岡市開發行爲の許可等に關する條例 平成16年3月29日條例第27號)”, “후쿠오카시 토지이용심사회조례(福岡市土地利用審査會條例 昭和49年12月16日條例第98條)”, “후쿠오카시 주거표시에 관한 조례(福岡市住居表示に関する條例 昭和39年3月30日條例第48號)”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도시의 녹지가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불가결한 것을 비추어 보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 시에서의 녹지의 적정한 보전과 녹지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한다(제1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는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 및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또한 제2장 ‘구획정리’에 분류되는 “후쿠오카 도시계획사업 메이하마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福岡都市計劃事業姪浜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 平成1年7月6日條例第44號)”, “후쿠오카 도시계획 하코자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福岡都市計劃事業管崎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 平成4年6月25日條例第34號)”, “후쿠오카 도시계획 이토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福岡都市計劃事業伊都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 平成9年3月31日條例第35號)”, “후쿠오카 도시계획 가시이역주변 토지구획 정리사



15) 후쿠오카시 예규집, http://www.city.fukuoka.lg.jp/d1w_reiki/mokuji_bunya.html(검색일: 2012. 2. 8.).

업 시행조례(福岡都市計事業香椎驛周邊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 平成11年3月11日條例第24號)”, “후쿠오카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조례(福岡市土地區劃整理事業助成條例 昭和33年4月1日條例第32號)” 등 각 지역마다 조례가 정해져 있다.

“후쿠오카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조례”에서는 “후쿠오카 시내에서 토지구획정리법(土地區劃整理法 昭和29年法律第119號)”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조성하여, 근대적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사업 조성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는 직원에 의한 기술지도(제3조 제1호)나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동조 제2호)가 이루어진다.

4. 공직에 관한 예규

공직에 관한 예규는 후쿠오카시 예규집 제4류 ‘인사’에서 후쿠오카시 직원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¹⁶⁾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직원 정수조례(福岡市職員定數條例 昭和27年3月31日條例第10號)”로 규정된다. 후쿠오카시 직원의 구체적인 정수를 보면, “후쿠오카시 직원 정수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사무부국직원 5,771명, 교육위원회 사무국 및 교육기관 직원 1,317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부국직원 30명, 감사위원 사무부국직원 25명, 인사위원회 사무부국직

원 16명, 농업위원회 사무부국직원 14명, 수도권 직원 387명, 교통국직원 572명, 소방직원 1,027명, 계 9,159명이다(제2조). 또한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福岡市職員の任用に關する規則 昭和46年12月25日人事委員會規則第4號)”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재임용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직원의 재임용에 관한 조례(福岡市職員の再任用に關する條例 平成13年3月29日條例第5號)”로 규정된다. 그리고 “후쿠오카시 직원의 공무원 윤리에 관한 조례(福岡市職員の公務員倫理に關する條例 平成13年12月20日條例第53號)”도 후쿠오카시 직원에 관한 조례이다.

후쿠오카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福岡市職員の給與に關する條例 昭和26年3月31日條例第18號)”, “후쿠오카시장 등의 급여 특례에 관한 조례(福岡市長等の給料の特例に關する條例 平成16年3月29日條例第8號)”, “후쿠오카시 직원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조례(福岡市職員の特殊勤務手當に關する條例 平成5年3月29日條例第10號)”, “후쿠오카시 직원 퇴직수당지급조례(福岡市職員退職手當支給條例 平成16年3月29日條例第10號) 등이 있다.

시의회 의원에 관한 조례로는 후쿠오카시 예규집 제2류 ‘의회·선거·감사’에 분류된다. “후쿠오카시의회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한 조례(福岡市議會議員の政治倫理に關する條例 平成



16) 후쿠오카시 예규집, http://www.city.fukuoka.lg.jp/d1w_reiki/mokuji_bunya.html(검색일: 2012. 2. 8.).

10年10月5日條例第49號)” 등이 있다.

그리고 후쿠오카 시장에 관한 조례로 “후쿠오카 시장의 정치윤리에 관한 조례(福岡市長の政治倫理に関する條例 平成10年10月5日條例第48號)”, “후쿠오카시장 등의 급여 특례에 관한 조례(福岡市長等の給料の特例に関する條例 平成16年3月29日條例第8號)” 등이 있다.

IV. 후쿠오카시의 독자적인 예규

1. 포장마차에 관한 예규

기타 후쿠오카시의 독자적인 예규로 “후쿠오카시 포장마차 지도요강(福岡市屋臺指導要綱 平成12年5月18日告示第118號)”이라는 것이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전국의 약 40퍼센트, 180개 이상의 포장마차가 있다.¹⁷⁾ 도로에서 포장마차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사용허가,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인 상태가 묵인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마차의 적정화를 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¹⁸⁾

“후쿠오카시 포장마차 지도요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포장마차 영업

에 관하여, 본 시가 하는 행정지도, 기타 시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공간 및 양호한 공중위생 확보를 도모하여, 포장마차가 이용자로부터 친근감을 받고 시민생활과 조화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제1조).¹⁹⁾

도로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업자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제7조 제1항), 기간 만료 후에도 포장마차를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새롭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도로공사를 할 때 포장마차 영업을 공사의 지장이 될 경우에는 “도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포장마차 영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포장마차 이전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때 포장마차 영업자는 이전에 소요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8조 제3항).

공원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업자는 “후쿠오카시 공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 제1항). 행위허가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제23조), “후쿠오카시 공원조례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원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4조). 공원을 공사할 때 포장마차 영업을 공사의 지장이 될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도로 공사에 관한 포장마차 이전



17) 山下義昭, 「福岡市屋臺指導要綱」ジュリスト, 通巻第1191号(2000年12月)60頁。

18) 山下義昭, 同上。

19) 山下義昭, 同上。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조).

포장마차 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은 “구두, 주의서 또는 경고서로 지도를 한다”(제27조). 그리고 경고로 지도를 1년에 세 번 받은 업자나 영업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해 업자에 대하여 점용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28조). 또한 보행자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할 경우에도 시장은 당해 업자에 대하여 점용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29조).

2. 후쿠오카시의 생활교통정책 관련 예규

예전에는 버스 이용은 출퇴근이나 통학 등 일상생활에 불가결하였으나, 자가용차가 보급된 것을 계기로 1960년대 이후를 장점으로 버스 이용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회사가 수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도로운송법이 개정되었다.²⁰⁾

개정 도로운송법에서는 버스사업이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되었으므로 버스사업의 신규 진입이 쉬워졌다. 그러나 노선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허가제에서 사전신고제가 되었기 때문에 채산이 안 되는 노선의 휴지

및 폐지가 쉬어져 많은 노선이 폐지되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2002년에 도로운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25개의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대중교통의 공백지가 많이 생겼다.²¹⁾

따라서 이러한 대중교통의 공백지에서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3월의 제1회 후쿠오카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대중교통 공백지 등 및 이동제약자를 위한 생활교통의 확보에 관한 조례(公共交通空白地等及び移動制約者に係る生活交通の確保に関する条例 平成22年3月29日條例第25號)”가 제정되었다.²²⁾

이 조례에서는 노선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동시에 전철역으로부터 약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대중교통 공백지(公共交通空白地)’로 지정한다(제2조 제6호). 또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약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대중교통 불편지(公共交通不便地)’로 지정한다(동조 제7호). 이러한 지역 이외에 고령화가 현저한 구릉지 등은 ‘대중교통 불편지에 준한 지역(公共交通不便地に準ずる地域)’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8호 ㄱ).²³⁾

이러한 ‘대중교통 공백지’나 ‘대중교통 불편지’, 그리고 ‘대중교통 불편지에 준한 지역’ 등을 ‘대중교통 공백지 등(公共交通空白地等)’으로 규정하여 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생활교통



20) 福岡市議会事務局調査法制課, 「福岡市における生活交通の確保について」議員Navi, 通巻第21号(2010年9月), 32頁.

21) 福岡市議会事務局調査法制課, 同上.

22) 寺島浩幸 「福岡市の生活交通政策と生活交通条例」住民と自治, 通巻571号(2010年11月)21頁.

23) 寺島浩幸, 同上, 23-24頁.

의 확보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8조). 또한 시장은 ‘대중교통 공백지 등’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대책구역(特別對策區域)’²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특별대책구역’에 대해서 생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특별대책구역’에 대해서는 시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²⁵⁾

V. 맺음말

후쿠오카시에서는 복지, 도시개발, 시설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모자가정, 아동, 장애인, 고령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상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분야에

서는 시민회관을 비롯하여 음악·연극 연습장, 지역 교류센터 등이 설치되었다. 공직 분야에서는 시직원, 시의회직원, 시장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후쿠오카시 독자적인 예규로 포장마차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강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후쿠오카시 독자적인 예규가 제정된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발전 및 침투되어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9년의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재개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시작되어 지방자치의 역사가 아직 길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을 활용한 예규를 제정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운영을 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미즈시마 레오(水島玲央)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24) “특별대책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시, 대중교통사업자, 학직경험자, 시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기관인 “지역대중교통회의(地域公共交通會議)”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객관성·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寺島浩幸, 同上, 24頁).

25) 寺島浩幸, 同上.